

2024년 제1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청년 미취업자에 대하여 공공부문 일자리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직무역량 강화를 실현하고자 체험형 청년인턴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개요

○ 모집분야 및 채용인원 : 총 23명

모집 분야	인원	수행 업무	배치 예정부서	근무지
경영기획 사무행정	5명	- 기획·홍보, 경영평가 지원 - 인사·경영·구매·계약 및 일반 행정지원 보조 - 민원 및 기록물 관리 등 행정보조 - 소방산업 진흥 업무(해외진출 지원, 행정지원 등)	•기획조정실 •경영관리부 •IT고객부 •산업진흥부	용인
안전관리	2명	- 안전·보건, 시설·보안 지원 등	•안전관리단	
소방용품 시험검사/ 기술기준	11명	- 형식승인, 성능인증, KFI인증, 공기질 분석 등 - 내부시험 및 부정기시험 업무 등 - 기술기준 제개정 및 행정지원	•시험인증부 •제품검사부 •기술기준부	
위험물 기술사업	2명	- 위험물시험·성상업무 및 위험물 DB 고도화 - 위험물탱크시험 실무교육 등	•위험물기술부	
소방장비사업	3명	- 소방장비 검사 등 접수 및 정밀점검 지원 등	•장비검사부	음성

※ 모집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하여야 하며, 중복응시는 불가

○ 응시자격

- 학력, 성별: 제한 없음
- 연령: 입사예정일(2024. 5. 28.)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공고일(2024. 4. 18.) 기준 미취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상 취업 상태가 아닌 자여야 하며,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지원불가)
- 합격자 발표 후 입사예정일(2024. 5. 28.)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기술원 인사규정 제16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인사규정 제16조 (임용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귀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인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6의2.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기술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7의2. 기술원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어 취소된 경우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근로조건

구 분	내 용
근로형태 및 근로기간	- 체험형 청년인턴 / 근무시작일로부터 7개월 * 청년인턴 지원자가 계약기간 중 병역의무 이행 또는 학업 등의 이유로 지속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남은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근로시간	- 주 5일(월 ~ 금요일), 1일 8시간 근무(09시 ~ 18시)
급여	- 월 211만원
기타사항	- 취업시험 특별휴가 처리, 취업박람회 참가 시 출장 처리, 근무 후 우수인턴으로 선발 시 정규직 채용에 특별가점 부여

○ 채용절차 및 일정

절차	원서접수	⇒	1차 전형	⇒	2차 전형	⇒	근로계약 체결
추진 일정	(공고 및 원서접수) 4.18. ~ 5.2. 18시		(서류심사) 5.3.~5.9.	⇒	(인성검사) 5.13.~5.15.		(면접심사) 5.20.~5.23.
	* 채용 홈페이지 등 공고 및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5.13.		* 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5.17.		* 최종합격자 발표: 5.24.
							(입사일) 5.28. 예정
							* 예비합격제 운영

* 채용 일정은 기술원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기 간: 2024. 4. 18.(목) ~ 5. 2.(목) 18시
- 공 고 처: 기술원 홈페이지(열린채용 게시판) 및 공공기관 알리오
- 접수방법: 온라인 입사지원(주소: <https://kfi.recruiter.co.kr>)
 - * 마감시간 임박 시 홈페이지 접속 지연이 우려되므로, 접수마감 1시간 전까지 여유롭게 접수 완료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3 전형단계별 제출서류

○ 원서접수시 제출서류

구 분	제출 서류
공통사항 (지원자 전체)	- 입사지원서 및 개인정보 제공·수집활용 동의서(온라인 제출)

○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공고시작일 이후의 발급분에 한함)

- (제출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

* 제출일정을 고려하여 사전에 발급가능여부 확인 및 준비 필요

구 분	제출 서류*
공통사항 (지원자 전체)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근로자용) 1부 * 공고일('24. 4. 18.)을 포함하여 출력할 근로년월일 설정
해당자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1부 *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증 제출 가능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연속 2년 이상 기간 명시) * 수급자와 지원대상자 해당 기간이 연속 2년 이상인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모두 제출
	다문화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국적취득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1부

*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오는 서류일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보이지 않도록 블라인드 처리하여 채용 홈페이지에 PDF 또는 JPG 파일로 제출

* 모든 증빙서류는 사실관계 확인만을 위해 활용되고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채용전형

○ 1차 전형

구 분	항 목	평가 내용
1차 전형	서류심사	- 서류심사 기간: 2024.5.3. ~ 5.9. - (응시자격 검토) 별도 합격배수 없이 응시자격 검증하여 적격·부적격 판단 ※ 모집분야 응시자격 부적격자 및 모집분야별 중복응시자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 (지원서류 검토) 입사지원시 제출서류의 블라인드 채용 위배사항 및 불성실작성 검토 ※ 블라인드 채용 위배(별첨 1 참조): 자기소개서에 성별, 연령, 종교, 학교명, 지역명, 가족관계 등 기재 ※ 불성실 작성 해당사항: 자기소개서에 무의미한 단어반복, 기관명 오기재, 비속어 사용 등 부적절한 문장, 문항과 맞지 않은 자기소개서 내용 기재
	인성검사	- 인성검사 기간: 2024.5.13. ~ 5.15.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인성검사 실시 후 적격·부적격 판단 ※ 출제기관의 전문적 형식 및 방법으로 진행하며, 인성검사 미응시자 및 부적격자는 불합격 처리

○ 2차 전형

구 분	항 목	평가 내용																					
2차 전형	면접심사	- 면접심사 전형위원이 다대다 블라인드 직무면접을 통해 평가 실시 - 면접시간: 4인 1조 기준 32분(1조당 3~5인 / 24~40분 면접 실시 예정) - 선발방법: 평가점수 60점 이상 득점자 중 가점 포함 고득점 순 선발 ※ 평가점수: 면접전형 위원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점수 ※ 가점을 제외한 2차 전형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 - 평가항목별 배점(총 100점: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25점), 정신자세 및 창의력(25점), 성실성 및 의지력(25점),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25점) - 가점적용: 2차 전형 점수에 해당 가점 합산(합산 점수 최댓값: 100점)																					
		<table> <tr> <th>구 분</th><th>가 점</th><th>판정 및 적용 기준</th></tr> <tr> <td>취업지원 대상자</td><td>5점 또는 10점</td><td>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 </td></tr> <tr> <td>중증장애인</td><td>10점</td><td>-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td></tr> <tr> <td>장애인</td><td>5점</td><td>-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의한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아닌 장애인</td></tr> <tr> <td>저소득층</td><td>3점</td><td>-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td></tr> <tr> <td>다문화가족</td><td>3점</td><td>-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td></tr> <tr> <td>북한이탈주민</td><td>3점</td><td>-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등록자</td></tr> </table>	구 분	가 점	판정 및 적용 기준	취업지원 대상자	5점 또는 10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	중증장애인	10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장애인	5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의한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아닌 장애인	저소득층	3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문화가족	3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북한이탈주민	3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등록자
		구 분	가 점	판정 및 적용 기준																			
		취업지원 대상자	5점 또는 10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																			
		중증장애인	10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장애인	5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의한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아닌 장애인																			
		저소득층	3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문화가족	3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북한이탈주민	3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등록자																			
		※ 복수의 가점 중 가장 높은 점수의 가점 한 가지만 적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3항 등에 따라 가점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별첨 2’의 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적용 기준 안내문 참조)																							

- (최종합격자 결정) 2차 전형 결과에 따라 모집분야별 60점 이상 득점자 중 가점 포함 고득점 순 선발하되, 동점자 처리방법은 아래의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합격자 선발

1) 취업지원대상자

2) 장애인

3) 면접심사 평가항목별 우선순위에 따른 점수상위자(가점제외)

※ 면접심사 평가항목별 우선순위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정신자세 및 창의력 > 성실성 및 의지력 > 의사발표 정확성과 논리성

- (예비합격자 선발) 2차 전형 고득점 순(가점 포함)으로 2배수 범위 내에서 예비합격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합격자를 채용할 수 있음

1) 기술원 인사규정 제16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예비합격자 선발기간 동안 최종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한 경우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계약 전 포기 포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채용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구 분	제출 서류
입사시 제출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1부 -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공개) 1부 -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뒷자리 공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1부 ※ 석사졸업의 경우 학사졸업증명서 포함 -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1부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경력 및 자격사항의 증빙서류 1부 - 증명사진 1부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기한 등 별도 안내 예정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원서를 접수하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 전 제출서류는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보이지 않도록 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전형 상의 불이익(불합격, 입사취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입사지원서(기술원 양식) 등 필수 제출서류 및 해당자 증빙서류 미등록
 - 입사지원서 작성항목의 허위 기재 시
 - 입사지원서 블라인드 채용 위배사항 기준 및 불성실 작성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이 입사지원서에 포함되어 있을 시
- ※ ‘경험 및 경력사항’에 직장명은 기재 가능하나, 학교 관련 경험이나 근무경력 기술 시 학교명 기재를 금합니다.
-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정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는 추후 입사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기술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반환이 가능합니다.
 -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첨3’) 작성 후 이메일 제출(sej2351@kfi.or.kr) 해야하며, 채용 홈페이지에 파일로 등록하여 제출한 경우(온라인 제출)나 기술원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제외

-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술원 인사 관련 규정을 적용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fi.or.kr>)를 참조하거나
(☎031-289-2714 / E-mail: sej2351@kfi.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18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